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최윤진*

이 글에서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증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특정연령은 기준으로 청소년 권리 행사에 대한 확실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 인식을 갖고,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지, 또 청소년은 과연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권리 행사 경벌의 제한이 결국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함양을 어렵게 하는지 않는지 등에 관한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요 논의들의 결과값 지적해 보면, 첫째 인간발달 과정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 그리고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성숙의 의미가 달라짐을 감안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확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연령 기준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인간의 인지발달, 도덕성 발달, 자율성 및 정치적 판단 능력 발달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를 위한 대부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10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완성됨은 알 수 있었고, 따라서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에 대한 주장이 타당치 못함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며, 청소년의 경험 부족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는 그 자체가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의 기회군 빼앗아 심각한 권리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성년자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확연히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거나 상당 부분 제한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 점은 아동 및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유형을 크게 보호 및 복지권과 자유권 및 참여권으로 분류해 볼 때¹⁾ 전자(보호 및 복지권)보다는 후자(자유권 및 참여권)의 권리주장과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행사에 있어서 두 집단(미성년자와 성년자)사이의 이질성과 차별성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교육, 의료 등 보호나 복지권을 주장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그들의 요구나 필요 그리고 이익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되지만 의견개진, 의사결정, 투표, 모임결성 등 자유권이나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혀야 하는 부담이 다르게 되며(Franklin, 1995:9), 결국 이러한 '능력'의 존재여부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이유가 되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권리기반을 제공하는 단서기 되고 있다.

즉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사회적으로 무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나 가정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일 뿐, 성인의 권리와 비슷한 의사결정 및 표현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 행사 등은 불합리한 판단과 선택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스스로에게 뿐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전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법률 및 제도 상으로도 미성년자 권리 제한이 정당화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자유권 및 참여권을 제한하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는 이들이 성인에 비해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미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이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로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0대 이전의 유아나 아직 신체적 발달도 채 완성되지 않은 10대 초반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런지 모르지만²⁾ 이미 사춘기에 진입하여 2차 성징 등 신체적·성적 발달을 거의 완료한 10대 중반 이후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들이 성인보다 현저하게 능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들의 권리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현재 20세 이상의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는 투표권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좀 더 구체

1) Franklin(1995)은 아동의 권리를 복지권 대 자유권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며, 이것은 Roger와 Wrightsman(1978)의 '양육nurturance'의 권리 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의 분류라든지, 최근의 '보호protection'의 권리 대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의 분류 틀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근래에 와서 아동의 복지권 뿐 아니라 자유권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육, 건강,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 등은 '양육', '보호' 중심의 복지권적 성격이 큰 반면에 의사표현 및 결정, 투표권 등은 '자기결정', '참여' 중심의 자유권과 참여권의 영역의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Franklin, 1995: p. 9). 그 밖의 청소년 권리에 있어서 복지권과 자유권의 권리 내용, 성격의 비교 설명은 이봉철(1991) 및 최윤진(1998:11-26) 참조.

2) 최근에는 아주 어린 유아 및 아동들에게조차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적절히 상황을 판단하여 자신의 이익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며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등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들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소개는 Moshman(1989)의 책 제4장 "The Emergency of Rationality" 참조.

적으로 지적해 보면, 만 19세 9개월 된 대학 1년생은 만 20세 3개월인 대학 2년생 보다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가? 18세의 건강한 고등학생은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에 비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권 행사 등 대부분의 정치적 참여 경험을 계속 제한받고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여 투표권을 행사할만큼 유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그 동안 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권리허용과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연령기준 자체가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능력과 성숙정도의 차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논리적·경험적 검증 없이 무조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무능력하고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왔던 사실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에서 비롯된 반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실질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성인보다 청소년이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간주되어왔던 가정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권리 행사가 청소년에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검토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초을 두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 2)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 3)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과 각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그 동안 청소년 권리 제한 주장 논리의 한계와 부당성을 지적해 보고자 함이 이 글의 근본 취지이며 이어지는 다음 장부터는 각각의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II. 특정 연령age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기준을 내세워 집단간의 권리허용과 제한에 있어 차별이 이루어질 때는 그 기준 자체가 합있는 한 쪽 집단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설정되어 특권 부여의 기준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은 인권 확산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동안 전세계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재산소유여부 등이 권리의 불균등

한 분배의 기준이 되었던 역사를 경험한 바 있고,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권리제한의 기준을 철폐해서 평등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오늘날까지도 각 집단의 인권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건국 초기 헌법제정 당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집단은 백인남성 중의 토지소유자에 국한되었다. 비록 남북전쟁 후 흑인에게 부분적으로 참정권 허용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확보하기까지는 100여년이 지난후, 흑인 인권운동이 격렬했던 1950~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의 참정권도 1870년경에 제안된 바 있으나 50여년이 흐른 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면서 1920년 8월 26일에서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Schamel, 1996: 374-376).

이와 같이 흑인과 여성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획득하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집단들에게 참정권 부여를 지지하기 위한 수많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적용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흑인들에게 선거세 *poll tax* 미납이나 문자해독능력테스트 *literacy test*에 통과 못하면 참정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조치라든지, 여성에게 남성과 차별적인 권리제한은 물론, 여성내에서도 30세 미만자와 그 이상 연령자를 구분하여 선거권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든지, 특히 기혼 여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참정권의 제한을 가하려 했던 사례들이 있어왔다(Freeman, 1983: 45).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진 흑인과 여성의 권리제한의 기준들은 현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백인과 남성 등 지배 집단의 기득권 및 특권 유지를 위한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분짓는 '연령 *age*'이라는 기준은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기준인가? 일반적으로 연령의 기준은 인간발달상의 성숙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구분짓는 '20세'라는 연령기준은 결혼, 노동, 정치참여 등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음을 승인해주는 분할점 *cut-off point*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분할점으로서의 연령기준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직 미숙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과중한 책임을 면제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 보호 차원에서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단 미숙으로 인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령'이라는 분할기준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고 누구나 일정시기가

되면 유예시켰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피부색 등과 같은 불공정한 기준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성숙정도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할점이 어느 위치의 지점에 지정되는가, 그리고 하나의 분할점이 관련 연령 대상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해서는 비판적 의문이 제기되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연령구분의 기준이 되는 ‘성숙maturity’의 특징과 의미 등을 살펴볼 때, 청소년의 권리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매우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숙’ 개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성숙과정의 주요 특징으로서 그것이 일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점과, 같은 연령 구성원들 사이에도 발달이나 성숙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19세 청소년이 20세가 되었다고 갑자기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19세 연령자 중에서도 이미 충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과 아직도 전혀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등 다양한 성숙 수준의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을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단일집단으로 간주하여 권리의 제한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집단에게는 참여 욕구와 권리의 포기를 강요하게 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권리제한과 허용의 시점을 18세로 잡느냐, 20세로 잡느냐 등에 관한 분할점 설정 지점의 결정은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결국 편파적이고 자의적arbitrary 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성숙의 의미는 인간의 여러 측면의 발달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성숙의 정도를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숙’ 정도를 이야기 할 때 인면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 도덕적 측면 등 의미하는 부분이 인간발달에 어떤 영역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성숙 정도가 달리 측정되어질 수 있다. 같은 연령의 청소년 중에도 으로는 조숙하지만 판단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으로는 미숙하지만 책임감과 자율성 등이 매우 발달한 경우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숙의 의미와 정도는 개인적 발달 과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가치관, 역할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으로 성숙하면 비교적 일찍 10대 후반에 결혼, 노동 등 성인의 역할이 부여되고 또 성숙한 성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비해 현대에 와서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시기 등이 점점 늦춰지면서 20대 후반까지도 여전히 성인으로서의 지위부여와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동시대의 다른 국가와 사회 사이에도 성인의 역할과 자격 규정이 상이하여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어른으로 또는 다른 편에서는 아이로 취급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지금도 영국 등의 몇몇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년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20세로 정하고 있고,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연령도 캐나다 등 몇몇 서구 선진국들은 18세에서 16세로 낮추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비해서(Megyery, 1991) 우리나라의 경우 20세에서 19세로 낮추려는 노력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역할 규정과 대우에 따라 실제 성숙 정도도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찍 성인 역할을 허용하고 또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일찍 조숙해지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숙의 의미와 정도는 인간 발달의 영역에 따라 또 개인이 속한 역사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연령 미만의 청소년의 권리를 일체히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차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 속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숙 정도에 대한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좌우됨으로써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결국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분하는 '연령'이라는 기준은 그 분할점이 주관적·임의적으로 설정되기 쉽고 그에 따라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다수 청소년의 권리 침해 혹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위험성을 지닌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숙의 정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성인과 청소년 권리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점과 관련된 '연령'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비록 연령 기준이 획일성과 임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성년자와 미성년자 구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현실에 맞게 연령 분할점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대로 수용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아예 연령과 관계된 능력 구분을 없애고 단지 능력 테스트 등 발달 심리학적 근거에 입각해 성숙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Freeman, 전계서:44). Schurag(1978)은 법률적, 제도적 연령 구분을 성년과 미성년의 두 단계의 구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청소년기를 더 세분하여 설정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한 권리와 책임 내용을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몇 가지 제안들 중 한 가지 입장에 동의한다든지, 또는 전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그 동안 청소년의 권리 제한을 위한 당연하고 타당한 기준으로 쉽게 인식되었던 ‘연령’ 기준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항상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 성숙 정도의 차이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기존 연령 기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요즘의 한국의 청소년들은 과거 1960~70년대에 비해 으로나 지적·문화적으로 매우 빠른 발달과 조숙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풍부한 영양,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한 빠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60년대 설정되었던 성년 연령과 참정권 획득 연령 등은 이제 개인적 성숙 정도와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하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융통성 있는 조정이 다수 청소년들의 권리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심리 및 생리학적 발달 이론들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적·성적 발달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0대 중반, 즉 청소년 중기 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발달과정이 완료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³⁾ 따라서 이미 신체적으로 어른이 다 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성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체적·성적 발달과 여타의 능력 발달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다른 발달은 다 이루어 졌는데 능력의 발달만 지체되고 부족할 것이라는 가정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경험

3) 발달이론에 따르면 10대 초반(남자는 평균 13~14세, 여자는 11세 정도)에 소위 성장 폭발(*growth spurt*) 현상이 나타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성기능의 발달도 대부분 이루어 지게 되는데 특히 근래에 올수록 성기능의 발달연령이 빨라지는 현상(*the secular trend*)으로 인해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초경시기가 평균 매 10년마다 4개월씩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0여년만에 평균 2년 5개월이 단축되어 1982년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평균 초경 연령이 12세 3개월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Forisha-Kovach, 1983; 한상철 외, 1997).

적, 실증적 근거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검증없는 자의적인 청소년에 대한 능력 판단이 청소년 권리 제한의 주요 논리로 수용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 예로, 근래에 한국에서 선거연령 인하문제가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어 위헌여부가 논의되었을 당시,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었던 다음과 같은 다수 의견의 일부 내용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입법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합의한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이다.”⁴⁾

물론 한 개인이 자신과 관계된 사안(예를 들면, 학과나 직장선택 등)이나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선택하거나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판단을 위한 인지적 능력과 올바른 선택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능력이 20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충분히 있는 반면 18세나 19세 청소년에게는 부족하거나 없다고 쉽게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별짓는 ‘능력’이 무엇이며 능력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실제로 권리를 제한받을 만큼 부족한지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관련 이론들과 선행 연구결과에 의거해서 사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성인과 청소년의 능력비교를 위한 전제조건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범주의 제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여기서 논의되는 ‘능력’이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자유권이나 참여권 등의 권리를 청소년들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Moshman은 기본적 자유나 사회참여를 위해 ‘선택의 능력 *the capacity for choice*’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 이것은 단순히 선택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 *reason*을 활용해 선택의 과정을 성립시켜 나가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합리성 *rationality*이라고 일컬고 있다. 따라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헌재판례집 제9권 1집, 674면 이하.

서 이 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합리성’의 발달정도를 비교 검토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주로 인간의 인지발달과정에 일차적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 전제 사항으로써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의 능력을 비교한다고 할 때, 여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청소년 그룹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에서도 이미 신체적·성적 발달을 어느 정도 완료한 약 15세 이후의 청소년 중기 및 후기에 해당되는 그룹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보호 및 복지권이 아닌 자유권이나 참여권의 제한과 침해를 심각하게 문제삼을 수 있는 대상은 나이 어린 아동이나 신체성장이 미숙한 초기 청소년들보다는 성년 연령에 근접한 중기 이후의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청소년과 성인과의 능력의 차이는 당연히 수용될 수 있는 반면에, 성년 연령에 근접한 청소년들은 성인과의 능력의 차이는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더 높게 제기 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전제사항은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비교해야 할 능력수준의 문제이다. 권리행사를 위한 청소년의 능력이 성인의 능력보다 부족하다고 간주할 때, 성인 중에 포함된 매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부터 무능력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의 소유자 중에 어느 수준의 성인 능력과 비교할 것인가에 관한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국민의 표현, 종교,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을 주로 명시하고 있는 제1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의 권리제한 원리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아동이 최소한도의 정상적 성인보다 덜 합리적임*the children in question are less rational than a minimally normal adult*’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Moschman, 전게서 : p. 48). 즉 여기서 강조하는 합리성 수준은 성인의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선거법에 있어서도 금지산 선고를 받았거나 범법으로 인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외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통합선거법 제18조 참조). 즉 이것은 정신이상 등 심각한 병적 장애인이나 범죄자가 아닌 모든 성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여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때, 금지산자나 범죄자가 아닌 정상 성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능력에도 청소년의 능력이 못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청소년의 권리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2. 성인과 청소년의 능력 비교

청소년 권리 행사에 요구되는 일차적인 능력을 '합리성'으로 볼 때,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중 인지능력의 발달에 가장 많이 영향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기 및 후기 청소년들이 과연 인지능력에 있어서 20세 이상의 성인에 비해 부족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의 발달과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시사해주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경험적, 실증적 발달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며 고전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Piaget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적 발달은 인지구조인 쉐마의 계구성 또는 확장과정이라고 하며 쉐마의 구성에 있어서 질적인 발달과정은 감각운동기(*sensori-motor period*),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의 4단계로 구분되어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그 이전 단계의 감각적 행동, 자기 중심적 사고 및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에 국한된 사고 과정에서 탈피하여 논리적, 추상적, 가설적,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거의 완성된 사고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Piaget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11세에서 15세 사이에 형식적 조작능력으로의 발달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이 시기에 가설적, 연역적 분석능력이라든지, 추상적 추론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형식적 사고능력이 더 일찍 나타나며 10대 초반에 이미 안정적 인지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Moshman(1989)은 이러한 인지발달능력을 연역적 추론 발달과정(*development of deductive reasoning*)과 귀납적 추론 발달과정(*development of inductive reasoning*)으로 나누어 4단계의 단계별 발달과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5세부터 유치원 아동들이 주로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이나 자기중심적인 내용에 의존하여 사고하는 내용중심단계(*focus on content*), 둘째는 주로 초등학교 수준의 저학년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추론중심단계(*focus on inference*)인데 이 단계에서는 단순 사실 인식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고 가설과 결론 구별이 가능해 지지만 아직 추론 자체가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에 치우칠 뿐 논리적 추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셋째는 경험적 사실의 의존에서 벗어나 논리적 형태와 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명료한 논리단계(*explicit logic*)인데 논리 추론 실험에 의하면 대개 11세경의 청소년들부터 이 단계의 사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마치

막 단계로서 논리체계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재된 초논리적 지식과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명료한 초논리단계 *explicit metalogic*가 존재하는데, 비록 몇몇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에게 이 수준의 사고능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거의 드물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Moshman에 의하면 일반 성인 수준의 연역적, 귀납적 추론 능력은 대개 3번째의 단계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평균 11~12세의 10대 초반이면 이미 대부분 그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Moshman은 논리적 사고능력의 발달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Osherson and Markman, 1975; Cummins, 1978; Russell and Haworth, 1987; Komatsu and Galotti, 1986; O'Brien, 1987; O'Brien & Overton, 1980 등)들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연구결과들이 경험적 사고 중심에서 논리적 추론 사고로 발전하는 제3단계의 사고능력이 11세 이후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oshman, 전거서; pp. 66-77). 따라서 Piaget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해 볼 때 기본적인 인지 능력은 대부분 15세 이전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15세 이후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의 기본적 인지능력에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적인 능력 수준의 차이는 청소년 집단이나 성인집단 양쪽 다 비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지능력 외에 도덕성이나 자율성의 발달 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우선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도 도덕적 정서나 행위보다 도덕적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Piaget와 Kohlberg 이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iaget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과정은 크게 도덕적 실재론 *moral realism* 단계와 자율적 도덕성 *autonomous morality* 을 획득한 단계 등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5세 이전의 도덕인식이 별로 없는 단계와 5~7세의 구체적이며 물질적, 그리고 절대적 도덕인식에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규칙 등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도를 분석할 줄 알며 결국 추상적 도덕사고까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적 도덕성은 대개 8~11세경에 보여주는 도덕적 상대주의 단계에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11세경에 이르러 조작적 사고가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도덕적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두루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의 발달이 10대 초반이면 대부분 종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hlberg는 도덕성의 발달단계를 3수준(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

적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별로 2단계씩 총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인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level*이 행위에 따르는 보상이나 처벌 등 타인이 가하는 물리적인 권위에 따라 도덕성이 판단되는 수준이라면 인습적 수준 *conventional level*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인간의 조화, 사회내의 법과 질서의 존중 등 사회내 기본 규칙과 의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후인습적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은 타인의 권위나 사회내 법과 제도의 존중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적 규범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단계로 구별되어 진다.

Kohlberg의 이론 검증을 위한 객관적 척도인 DIT검사를 활용한 Kohlberg (1963)의 초기연구에 따르면, 10세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은 전인습적 수준에 머무는 반면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습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6세의 약 15% 정도만이 후인습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의 유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후인습적 수준에 포함되는 제5단계 및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는 5단계에 10%미만 수준, 6단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인습이후 수준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란 단지 이상적 수준에 불과할 뿐 실제 진단 가능한 발달 수준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한상철 외, 1997: 149~250). 즉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도덕수준은 '인습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은 이미 10대 청소년기에 대부분 획득하는 발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도덕성 발달 수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들의 자율성 발달에 관해서도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보다 친구에게 의존하는 등 여전히 의존성향이 높고 자율성이 부족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또래 집단에 대한 집착이나 의존도 대개 13~14세에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성인과 비슷한 정서적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Coleman, 1980; Steinberg & Silverber, 1986; Moshman, 1989에서 재인용)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나 사고능력도 대부분 구체적·경험적 중심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능력으로 발달해 나가며 대부분 15세경이면 이러한 정치적 사고능력이 완성되어진다는 연구결과들(Adelson and O'Neill, 1966; Adelson, 1971; Forisha-Kovach, 1983에서 재인용)도 결코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율성이나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을 증빙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청소년 인지능력의 발달과정은 주로 자기중심적이며 구체적, 경험적 수준의 사고능력으로부터 논리적·추상적 수준의 사고능력으로의

전이과정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발달과정이 10대 초반 혹은 늦어도 15세 이전에 성취되어짐으로써 그 이후 시기의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능력의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도덕성이나 연역적·귀납적 추론 능력에 있어서는 청소년기에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성인도 마찬가지로 획득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합리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권리행사의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우리가 능력의 발달이나 성숙과정을 이야기 할 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앞 장에서 소개한 심리학적 발달이론들이 보여주듯이 능력의 발달이 생애적으로 짜여진 단계대로만 발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은 인지적·도덕적 판단능력의 부족보다는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권리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 가운데에는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선택, 사회참여 등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면 과연 언제 그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Franklin(1995)은 이러한 논리가 결국 순환론적 오류 *tautology*를 범하게 됨을 지적하며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의 기회와 경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청소년의 실수가능성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실수를 통해서 중요한 경험들을 획득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실수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며 실수의 가능성은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높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전쟁, 기근, 인종차별 등의 현상들은 대부분 성인들의 의사결정 및 선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실수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성인들이 폭넓게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만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Franklin, 1995 : 11).

또한 청소년들이 비록 성인에 비해 현실적 생활을 위한 ‘실재능력*actual competence*’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재된 무한한 ‘잠재능력*potential competence*’을 가진 존재들임을 인식할 때(최윤진, 1998: 19) 이러한 잠재능력의 발견과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획득이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사회와 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자율적이고 유능한 민주시민이라면 이에 필요한 잠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선택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은 곧 미래의 성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차이는 곧 현재 성인과 미래 성인의 권리의 차이로 바라볼 수 있다. 두 집단 중에서 권리 행사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요청되는 집단은 ‘미래성인’인 청소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성인’에게 자유권이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면 단지 권리행사 권한이나 기회를 놓치는데 그칠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권한과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의사표현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등 미래성인에게 필수적인 성장과 발달 기회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능력’을 지닌 ‘현재성인’의 입장에서 ‘잠재능력’을 지닌 ‘미래성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의 경험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두 집단 사이에 권리 행사의 경험기회는 대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단지 무슨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권리 행사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차별적 적용의 기준은 두 집단의 서로 다른 요구*need*와 달리 추구하는 이익*interest*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 집단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성인인 청소년은 현재성인에 비해 ‘잠재능력’을 찾고 키워야 할 성장의 욕구, 발달의 필요가 현재성인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 및 가정, 사회 생활 속에서 청소년의 관심과 능력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의 다양한 권리 행사의 경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

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통용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과연 청소년의 권리 제한의 논리와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인 관련 이론이나 연구결과를 분석하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 1)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 2)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 3)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각 문제에 대한 주요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일반적으로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성숙과 미성숙의 분할 경계로 삼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이 서서히 일어나고 또 각 개인에 따라 발달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성숙의 의미가 인간의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역할규정 등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할 때, '연령'의 기준은 그 분할점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권리구분의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연령기준의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적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성숙차이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의 능력 비교 기준으로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여기서 능력은 주로 인간의 이성작용이 중심되는 '합리성'의 의미로 해석하고 합리성 비교를 위해서 인간발달 과정 중에 인지능력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인능력과 비교할 청소년 대상을 중기(약15세) 이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비교할 성인 능력의 비교수준은 일반 정상적 성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능력 수준을 전제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Piaget,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 도덕성발달이론, Moshman의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연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자율성 등은 주로 10대 초반(11~12세경)에 이미 성인 수준의 발달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세 이후 청소년들과 성인과의 능력이 다르다든지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셋째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하여 실수 않고 능숙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다시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경험 없이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순환적 오류

tautology에 빠지게 됨을 지적하였다. 실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이 실수를 통한 성장의 기회와 경험이 부여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특히 청소년을 '실재능력' 소유자인 '현재성인'과 대별되는 '잠재능력' 소유자인 '미래성인'으로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다양한 권리행사의 경험이 잠재능력의 개발과 미래성인으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권리행사의 경험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필요한 능력 획득과 성숙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분짓는 연령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권리침해의 위험성과 두 집단의 능력차이 주장에 대한 부당성,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권리 행사 경험의 필요성들을 점검하고 지적해 봄으로써 함부로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됨을 밝히려하고자 하였다. 즉 그 동안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너무 많이 허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왔던 기성세대들에게 반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너무 많이 함부로 제한할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pp. 5-29.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한상철 외 2인(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Forisha-Kovach, B.(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 Development in Context*. Lond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 Franklin, B(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D.A.(1983). *The Rights and Wrong of Children*. London: Frances Printer Pub.
- Megyery, K.(1991). *Youth in Canadian Politics -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Toronto: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 Moshman, D.(1989). *Children, Education and the First Amendment*.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chrag, F.(1979). *From Childhood to Adulthood: assign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Strike, K. A. & Egan, K. (eds.)(1979). *Ethics and Educational Policy*. London:

Routledge & Kegan Poul.

Schamel, W.(1996). The 26th Amendment and Youth Voting Rights. *Social Education, Vol. 60 No. 6*, pp. 374-376.

ABSTRACT

A Study on the Cases against Arbitrary Limitation on Youth Right

Choi, Yun-Jin *

Youths in many societies are denied or limited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r right of freedom, or right of participation, which as adults we take for granted. But any society wishing to deny youth rights which are the common property of adult group, should be able to offer clear and sustainable reasons for doing so.

Can we justify a double standard in our treatment of adults and youth? Why should chronological age be the criterion?

The intend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various stands to the debate concerning the answer of above questions.

On the whole, the special treatment of youth has been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ir incapacity or lack of maturity. But, the abridgment of youth right must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empirical evidence that the youths in question are indeed incapable or immature or irrational.

In this paper, the argument for denying rights to youth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rational and lack capabilities or experiences has been strongly contested.

Under this pressure, this paper showed following several findings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Firstly, considering on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not grow by sudden and they do not develop at the same rate, and the fact that the conception of maturity is form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rather than that of individual,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strict age limits can regress into an arbitrary and inconsistent relativism. So, age limits must be consistently

* Department of Adolescent Science, Chung-Ang University

re-examined.

Secondly, the fact that youths do reveal a competence for rational thought and do make informed choices was justified by analysing the empirical evidences which showed that in both moral and cognitive development, many reach adult levels between twelve and fifteen years old.

Finally, this paper showed that the argument which suggests that youths are likely to make to make mistaken choices, because they lack experiences rested on tautology and a confusion. Youths cannot get the positive opportunities to learn from their experiences if they a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ir rights.